##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753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김태선・이훈기・박 정

김태년 • 윤종군 • 한민수

박홍배 · 정준호 · 김주영

이기헌 • 이용우 • 박균택

이학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도급 계약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

의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 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임금지급을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용도 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 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인의 사업장이 소재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간접고용노동자를 임금체불 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급 계약의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도급인(발주자를 포함한다)은 그 사업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비용을 임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이하 "임금비용예치"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위한 전용계좌(이하 "임금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해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⑥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때는 수급

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고용노동부장관 및 수급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 제2항의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임금비용예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생 략)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② 도급 계약의 금액 등이 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인 사업의 도급인(발주자를 포
	<u>함한다)은 그 사업의 수급인이</u>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
	에서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지
	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비용을 임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u>&lt;신 설&gt;</u>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체
	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
	에게 예치(이하"임금비용예치"
	라 한다)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④ 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
	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이하
	"임금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

<u><신 설></u>

<신 설>

<신 설>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 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때는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그결과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수급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 제2 항의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방 법·절차, 제3항에 따른 임금비 용예치의 방법·절차 등에 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